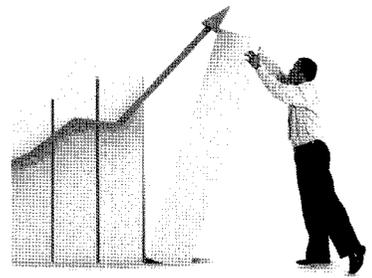


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‘창업·실용과제’ 시행으로 미래유망 기술개발 지원

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향상을 위하여
656억원 규모의 창업·실용과제 공고를 실시함

사업개요

- “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”은 중소기업이 신규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R&D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기업특성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3대 과제*로 구분되며,
 - ※ 3대 과제 : 글로벌투자과제, 미래·선도과제, 창업·실용과제
- 이번에 공고하는 “창업·실용과제”는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이 자유 제안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
- 10년 지원규모 : 656억원(창업 120억원, 실용 536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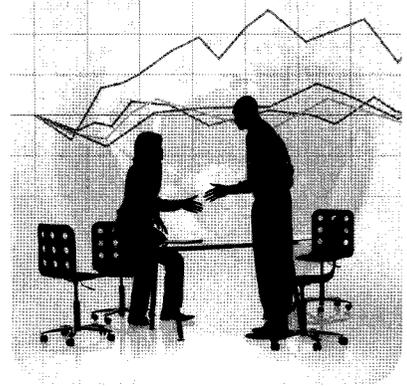
지원분야

-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“창업·실용과제”는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
 - 창업분야 :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
 - 실용분야 :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3년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
 - ※ 업력 판단 기준 : 창업분야과제 접수마감일(4.22)을 기준으로 판단

신청자격

■ 기본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
- 과제가 산업기술분류 상 “지식서비스 분야”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
 - ※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는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



■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- (서면 및 대면평가시)
 -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 (전문기관)
- (현장평가시)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(관리기관)
 - ※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.

구분	확인 근거(증빙서류)
설립년월일 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사업자: 사업자 등록증 • 법인사업자: 법인 등기부 등본 ※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 부터 입력 상정
최근년도 매출액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

*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

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
■ 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(실용분야)

-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실용과제에 신청할 경우 지침상에 적용되는 가점*과는 별도로 해당기업에 가점(1점)을 부여
 - ※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7조 다항의 자유응모과제에 적용되는 가점인정 항목(최대 2개까지 적용)

지원내용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최대 1년, 2.5억원까지 지원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)



신청기간 및 방법

■ 신청기간

- 창업분야 : 2010년 3월 23일(화) ~ 4월 22일(목) 24 : 00까지
- 실용분야 : 2010년 4월 26일(월) ~ 5월 25일(화) 24 : 00까지

※ 마감일 24: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 ※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창업분야 4월 22일(목) 18:00, 실용분야는 5월 25일(화) 18:00까지

■ 신청방법 : 온라인 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<http://www.smt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○ 온라인 신청절차

신청절차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수행내용	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	접수확인 및 완료
사업계획서		[별지 제1-①] Part I	[별지 제1-①] Part II	

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■ 서면평가(창업 : 5월, 실용 : 6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

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■ 대면평가(창업 : 5~6월, 실용 : 6~7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, 사업계획 타당성, 기술성,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■ 현장평가(창업 : 6~7월, 실용 : 7~8월)

-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, 인프라(연구인력, 보유시설),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신청기업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 선정



■ 지원과제선정(창업 : 7월, 실용 : 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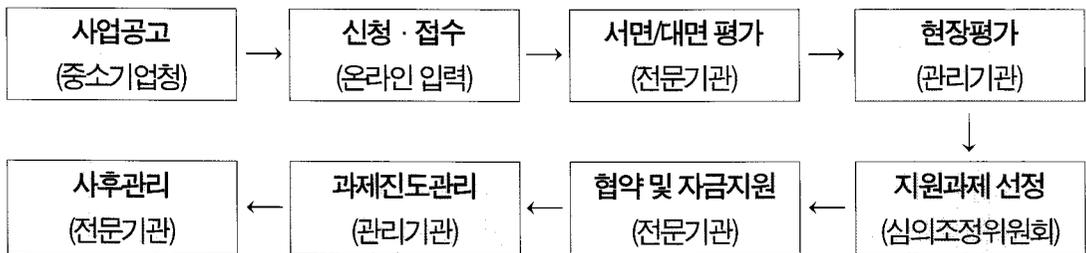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청 '심의조정위원회' 를 개최하여 3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·확정

신규 종합평점 = (대면평가 점수 0.6 + 현장평가 점수 0.4) + 우대배점 - 감점
 ※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

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창업 : 7월, 실용 : 8월)

-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을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

〈 01년 미래·선도과제 추진절차도 〉



※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기술료 납부

-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"성공"으로 판정받을 경우, 총정부출연금의 20%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

※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
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
■ 신청제한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
 - ※ 접수 마감일 기준, 단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(산학연협력지원사업 및 중소기업R&D기획지원제외)중에서 자유응모형과제(舊실용/일반과제)를 주관기관으로 4회이상 수행하였고, 재차 자유응모형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불가(접수마감일기준)

■ 평가·지원제외

※ 평가·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·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
○ 주관기관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기업의 부도, 휴 · 폐업
-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 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- ③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-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 ※ 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
※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

○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사업 문의

■ 사업총괄 및 전문기관

담당기관(담당부서)		전 화	문의사항
사업총괄	중소기업청(기술개발과)	042-481-4446/51	시행계획 및 추진일정
전문기관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중소기업평가팀)	042-715-2353/54 042-715-2356/57	신청 · 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중소기업 R&D 콜센터)	042-715-2353/54 042-715-2356/57	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